

설비 구축 계약서

(이하 “본 계약서”)

1. 사업명 : 롯데웰푸드 인천 RDC 자동화 설비 구축(이하 “본건 공사”)

2. 공사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84-5

3. 준공기한 : 2024년 10월 15일

4. 계약기간 : 2023년 08월 22일 ~ 2024년 12월 31일

5. 계약금액 : 일금구십칠억구원정 (₩9,70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6. 계약금액의 기준 : 견적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7. 대금 지급방법

- 선 금(계약금액의 10%) :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익월 말일까지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 도 금 1차 (계약금액의 10%): “수급인”은 상세설계(최종제작도 승인) 완료 시 “도급인”에게 중도금 1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 도 금 2차 (계약금액의 15%): “수급인”은 Sub-Order(주요기자재: 장남기품) 완료 시 “도급인”에게 중도금 2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 도 금 3차 (계약금액의 25%): “수급인”은 설비 납품 현장 도착시(Equipment 별 진행) “도급인”에게 중도금 3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 도 금 4차 (계약금액의 20%):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설비 설치 완료 시(Equipment 별 진행) 도급인에게 중도금 4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준공금(계약금액의 20%): “수급인”은 성능테스트 완료 후 테스트 결과 서류 및 일반조건 제25조 서류 제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며 최종 인수조건 충족에 대한 “도급인”의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최종 인수인계서 서명 시점에 “도급인”에게 준공금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도급인”은 적정성 검토 및 인수인계서 서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8.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일(최종 인수 서명 시점)로부터 2년

9. 지체상금율: 매지체(근무)일마다 총 계약금액의 3/1,000, 총 계약금액의 10% 한도

지체상금은 위약벌로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10.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 손해배상, 공사도급계약 특별조건 제2조의 성능미달 책임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및 성능미달 책임의 총액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1. 공사도급계약 특별조건 제3조의 정상 운영 인력 책임에 따른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제하여야 할 “추가 작업원 인건비에 대한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 특별조건 각 1부.
2. 일반시방서 / 특기시방서 각 1부
3. 공사일정표 1부.
4. 도면 1부.
5. 견적서 1부.
6. 설비성능검증기준(승인테스트) 1부
7. Spare Part 공급 확약서 1부
8. 안전관리 서약서 1부.

2023. 8. 18.

도급인

롯데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대표이사 노준형



수급인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9길 25

대표이사 김영민 (인)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 (총칙)

- ①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 ② 본 계약 이행을 위한 내용은 이 조건(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을 말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면 합의한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롯데웰푸드 인천 RDC 물류자동화 설비 구축 공사(이하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는 설비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6. “제안서”라 함은 제안요청서에 대한 조견표, 제안서, 공사도면, 공사일정표, 견적서(내역서)를 말한다.
7. “견적서”라 함은 공종 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8. “천재지변”이라 함은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지진, 화산활동 등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자연재해를 의미한다.
9. “불가항력”이라 함은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있고, 당사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전혀 예견할 수 없던 사건으로, 사태 발생 후 당사자가 최선의 예방수단을 다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천재지변, 전쟁, 사변, 전염병 등을 의미하며, 수급인”의 공사시공으로 인한 민원 제기 등은 불가항력으로 보지 않는다.
10. 준공기한은 “수급인”이 공사 도급 업무를 완료하기로 약정한 기한으로 준공승인일 이후에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등 제25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단, 준공기한은 상세설계 및 사업진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
11. 준공일은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을 최종 인수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등 제25조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한 날을 의미한다.

제3조 (계약문서)

-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특별조건, 일반조건,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공사일정표, 도면, 견적서, 설비성능 검증기준, Spare Part 공급 확약서, 안전관리 서약서로 구성(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된다.
- ②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1항에 기재된 순서대로 우선적 효력이 있으며 하위에 있는 문서의 내용이 우선적 효력이 있는 문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하위의 문서는 상위 문서의 그 상충 내용 범위 내에서 수정되는 것으로 본다.
- ③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별도의 변경 계약서에 의하여만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중요사항의 통지)

양 당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일방이 본 조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서면 통지가 송달 불능된 때에는, 그 상대방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위반 당사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환부수취 거절의 표시를 한 등기우편의 발송으로써 갈음할 수 있고, 당해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이 그 우편을 발송한 때에 위반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반 방침의 준수)

- ① “수급인”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도급인”의 윤리경영, 환경보전, 개인정보보호 의지와 방침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 ② “도급인”은 전항의 방침에 대한 강령과 지침 등을 제정하여 “수급인”에게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의 임직원, 이행보조자 등이 전항의 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의뢰에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환경관리)

-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환경오염 억제 및 방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
 2. 소음방지에 대한 대책
 3. 주변 환경오염의 방지 대책
 4. 기타 “도급인”이 요구하는 오염방지 대책
- ② 본 계약의 이행 과정 중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 처리는 “수급인”의 공급범위 내에서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처리계획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한 다음에는 반드시 처리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도급인”은 “수급인”의 환경관리 실태를 수시로 실사할 수 있고,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환경오염에 관한 일체의 민원을 그 책임과 부담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유출되도록 방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당사자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위반당사자는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③ 제1, 2항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실효되지 아니한다.

제8조 (수급인의 의무)

-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도급업무를 성실, 정확,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시킴으로써 “도급인”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수급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급인”이 수행하기에 적절치 아니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도급인”이 인정한 경우, “도급인”은 대체수단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도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도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이행 보증보험 또는 각서)

- ① “수급인”은 피보험자를 “도급인”으로 하고 보험가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보험에 각 가입한 다음 그 증권 원본을 제25조에서 정하는 날까지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계약)보증보험 :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이행(선급금)보증보험 :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이행(하자)보증보험 :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년)
- ② 제1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수급인”은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항 각 호의 보험가액에 부합하도록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가액을 증액하고 그 증권 원본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면 합의하여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준공기한이 연장된 경우 “수급인”은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조 제1항 각 호의 보험기간을갱신하고 그 증권 원본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이 본 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도급인”은 제1항 각 호의 보험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그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제2장 업무의 수행 및 인력 관리

제10조 (공사재료)

- ① “수급인”은 주요 국제공업규격의 신품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재료를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재료 외의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전항의 “도급인”의 검사 없이 “수급인”이 실제로 사용한 재료는 “도급인”의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자체 없이 현장에서 반출하고 다른 재료를 수배하여 “도급인”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본 항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반출하거나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검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검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이유 있게 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 일정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
- ⑤ “수급인”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착공 및 공정보고)

-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예정공정표
 2. 공사비 산출내역서(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4.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호 협의한 사항
-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도급인”은 “수급인”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제12조 (시정 요구)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 ② 제 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도급인”的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

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공사의 변경 또는 중지)

- ① “도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대하여 “도급인”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내용이 변경·추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 내용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은 적어도 공사 착수 14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인”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한다.

제13조의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가설 구조물을 포함)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양사는 협의를 통해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3개사 이상의 견적이나 신규비목의 물가정보단가에 유사비목(또는 평균)의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공사도급내역서상의율을 적용한다.

제13조의2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제13조의1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상의율을 적용한다.”
 1. 계약내용의 변경
 2.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3.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

- ② “수급인”은 제13조의1 및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 (공사기간의 연장)

-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
 2.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3. 원자재 수급불균형
 4.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13조의1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검사 및 인도)

-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2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도급인”的 검사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는 지체상금 산정 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도급인”은 전항의 준공검사 결과 공사 목적물이 계약 조건대로 시공되고, 보전 및 운영교육의 실시 등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도급인”이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날을 준공일로 본다.
- ③ 제1항의 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의 정함을 준용한다.
- ⑤ “수급인”이 전항의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급인”이 재검사 결과를 통지하는 날까지 “수급인”은 제3항의 보수 또는 개조를 하지 못한다. 다만 “도급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도급인”이 제2항의 인수를 마친 경우 “수급인”은 모든 공사시설 및 잉여 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하고 현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⑦ “수급인”은 그 책임과 부담으로 본 조의 검사와 재검사, 이의 제기, 보수 및 개조, 철거와 반출 및 이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⑧ “수급인”은 본 조에 따른 “도급인”的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보수 또는 개조를 하더라도 검사를 통과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이 계약 조건에서 정한 성능에 미달함을 인정하고 “도급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

은 “도급인”의 목적물 인수 전까지 보전 및 운영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물의 성능 미달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부분사용)

- ① “도급인”은 공사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7조 (하자보수)

- ① “수급인”은 제15조 제2항의 준공일로부터 공사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도급인”이 제16조에서 정한 부분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품질 및 상태의 결함 또는 규격 불일치
- 최종인수 및 모든 작업의 인수 이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 설치 또는 보수 작업자의 미숙련으로 인한 결함
- 무시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결함
- 저급 재질 선정에 따른 결함
- 재질 형상의 변질에 의한 결함
- 제작 잘못으로 기인한 결함

- ② 공사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전항의 무상하자보수기간에 보수를 진행한 이후 3개월 이내 동일한 문제 발생시 무상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③ 무상하자보증 기간 중 “수급인”이 유지보수 및 하자 보수를 미이행 또는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한 또는 불완전한 조치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장비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여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제1항의 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3호의 증권 원본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관리)

-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안전조사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① “수급인”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투입인력(“수급인”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투입인력”이라 한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며, 투입인력의 작업상 또는 보건상 위해 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급인”은 계약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경비의 상당액을 계상

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는 상기 안전관리비 및 법정경비의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 ④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안전사고 또는 투입인력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인” 또는 “수급인”的 현장대리인에 대해 즉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수급인”的 현장대리인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수급인” 및 그 투입인력이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로 인하여 “도급인”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수급인”的 책임과 비용으로 “도급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투입인력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다.

제18조의1 (건설근로자의 보호)

-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긴급조치)

- ① “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도급인”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8조의3 (안전조치의무)

- ①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다.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수급인”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제,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수급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④ “수급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 ⑤ “수급인”은 “도급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 ⑥ 본 조의 “수급인”의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하여 제18조의 2의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 ① “수급인”이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이행보조자를 선임하는 경우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고용 또는 선임하여야 한다. 이들의 행위에 관한 “수급인”의 책임은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 ② “수급인”은 그 소속 직원을 위탁업무에 투입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위탁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수행 방법 등을 지정하여 상시 그들을 지휘, 관리, 감독함으로써 위탁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투입인력이 “도급인”의 직원으로 오인되거나 간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투입인력이 위탁업무를 안전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로서 안전 및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투입인력들과의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 복리혜택, 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그 임원, 직원 및 제3자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및 거래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수급인”이 “도급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주지시켜야 하고, 계약서 등에 위 내용을 명시 하여야 한다.
- ⑥ “수급인”이 전항을 위반하여 “도급인”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수급인”은 그의 책임과 부담으로 “도급인”을 면책시켜야 하며(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포함하며, “도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그로 인한 “도급인”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⑦ “수급인”은 투입인력의 휴무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 및 야간, 휴일 용역제공에 따른 사고의 예방, 과로방지를 위하여 대체(예비)인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독원 및 현장대리인)

-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지휘자 또는 감독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 및 지휘명령
 2.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도급인”과의 연락 및 업무조정
 3. 투입인력에 대한 규율질서의 유지
 4. 기타 본 계약의 처리에 관한 사항
-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

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수급인”은 “도급인”이 따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주임기술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주임기술자는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공사수행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이 경우 주임기술자의 선임 사실 통지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현장대리인과 주임기술자는 “도급인”的 서면 승인을 얻은 후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⑥ 현장대리인과 주임기술자는 겸할 수 있다.
- ⑦ “도급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주임기술자가 본 계약상 의무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⑧ 전항의 규정은 전조 제1항의 종업원 또는 이행보조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대금의 지급과 조정

제21조 (공사대금)

- ① 공사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선 금(계약금액의 10%) :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익월 말일까지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 도 금 1차 (계약금액의 10%) : “수급인”은 상세설계(제작도면 승인) 완료시 “도급인”에게 중도금 1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 도 금 2차 (계약금액의 15%) : “수급인”은 Sub-Order(주요기자재: 장납기품) 완료 시 “도급인”에게 중도금 2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 도 금 3차 (계약금액의 25%) : “수급인”은 설비 납품 현장 도착시(Equipment 별 진행) “도급인”에게 중도금 3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중 도 금 4차 (계약금액의 20%) :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설비 설치 완료 시(Equipment 별 진행) 도급인에게 중도금 4차분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준공금(계약금액의 20%) : “수급인”은 성능테스트 완료 후 테스트 결과 서류 및 일반조건 제25조 서류 제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며 최종 인수조건 충족에 대한 “도급인”的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최종 인수인계서 서명 시점에 “도급인”에게 준공금을 청구하고,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도급인”은 적정성 검토 및 인수인계서 서명을 합리적 이유 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도급인”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상사 법정이율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 (선금)

-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선금 청구와 동시에 선급금이행보증증권 및 선급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선금 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차제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수급인”이 선급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3조 (준공일과의 관계)

“수급인”은 “도급인”이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수급인”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 받고,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준공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24조 (양도 등의 금지)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 (제출 서류)

- ① “수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금: 선금 지급 신청서,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 이행(선급금)보증보험 증권, 업무 수행 계획서,
 2. 중도금: 중도금 지급 신청서, 도면, 내역서(계약내역서 물량 대비), 설계변경 자료, 현장 사진
 3. 준공금: 준공금 지급 신청서, 최종 내역서(계약내역서 물량 대비), 설계변경 최종 자료, 최종 사진첩 (제본 3부, PPT파일 및 PDF 파일로 보관된 USB 3개), 검수 완료 확인서(장비 성능 테스트), 최종 도면(제본 5부, CAD 파일 및 PDF 파일로 보관된 USB 3개), 교육 실시 확인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제본 5부, PDF 파일로 보관된 USB 3개), 매뉴얼 인수인계 확인서,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4. “도급인”이 계약서에 명기된 서류 외 산출물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급인”은 제출해야 한다.
- ② “수급인”이 전항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출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전항 제 1호의 서류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전항 제 2호의 서류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공사대금을 지

급한다. 다만 그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가 있는 경우 그 손해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3. 전항 제 3조 서류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직접 공사 목적물의 인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③ 전항에 의한 계약해지는 “수급인”이 제출한 일체의 담보에 관한 “도급인” 담보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④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또는 위약벌 채권을 가지는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의한 손해액에 가산하여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26조 (대금 조정)

당사자는 본 계약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 계약금액에 허위 또는 착오가 있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해지

제27조 (손해배상)

“발주사” 또는 “공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서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 ①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 본 계약에 따른 공사용역 기타 의무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불가항력 사유가 종료하는 즉시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29조 (지체상금)

-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근무일)마다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지체상금의 한도는 총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도급인”과 “수급인” 양당사자는 본 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위약벌임을 확인한다.

-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경우 “도급인”은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실행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30조 (계약 해제 등)

-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을리하여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 사전 서면 시정최고를 받고도 그 정한 기한 내에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상대방이 파산, 회생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받은 때
 3. 상대방의 주요 재산에 보전처분, 강제집행(공매를 포함한다) 절차가 개시된 때
 4. 상대방이 해산을 결의하거나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때
 5. 상대방이 빌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때
 6.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때
- 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간 합의한 착공일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기한 내에 도급 업무를 완료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3. “수급인”이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특허, 면허, 인가가 취소되거나 그러한 등록이 말소된 때
 4. 본 계약상 의무 이행 거절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때
 5. 본 계약의 일부로 보는 문서에 의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6. 본 계약에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발급받은 때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④ “수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도급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21조의 공사대금을 60일 이상 미지급한 경우
 2.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의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 이행이 불가능한 때
- ⑥ 본조의 해지는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계약해지의 효과 및 후속조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 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이를 지체 없이 확인 후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금액을 “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 (하도급)

- ① “수급인”이 본 계약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급인”的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관한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은 공사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2조의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 ② “도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的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기타

제33조 (계약의 해석)

- 당사자간 본 계약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법령에 의하고, 법령에 정함이 없으면 상관습에 의하며, 상관습도 없는 때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34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35조 (합의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심판할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36조 (부폐방지 및 공정거래)

-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 ② 양 당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